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117
----------	-------

발의연월일 : 2026. 9. 4.

발 의 자 : 김선교 · 김상훈 · 윤상현
구자근 · 최수진 · 최보운
김대식 · 김성원 · 김위상
엄태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벤처기업이 그 요건을 갖추지 않게 된 경우 청문절차와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벤처기업 확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청문절차는 청문통지부터 종료까지의 20일 남짓이고 그마저도 통지 10일 이후에 개최되는 청문에 불출석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면 곧바로 종료되므로 벤처기업에게 충분한 자발적 시정 기회를 주기 위해서 청문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청문통지부터 청문일까지의 기간을 현행 10일 이상에서 20일 이상으로 늘리는 특례를 신설하여 벤처기업의 존속과 직결되는 중대한 처분인 벤처기업 확인 취소에 대하여 자발적 시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5조의2제2항 후단 신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청문의 통지기한은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문의 통지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청문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5조의2(벤처기업 확인의 취소) ① (생략) ②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의 확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25조의2(벤처기업 확인의 취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청문의 통지기한은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20일 이내로 한다.